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63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이훈기 · 김문수 · 박지원
김승원 · 박해철 · 김남근
김 윤 · 이재관 · 이병진
이주희 · 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책임자의 조직 내 지위나 실질적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대규모화·지능화되고 있으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이 없어 필수적인 보안 인력 확보와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음. 또한, 경영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정보보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역

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임직원”을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바. 이사회에 대한 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사.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① 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u>임직원</u> 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 ----- ----- ----- ----- <u>임원</u> <u>(「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u>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1.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u>마.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u>

<u><신 설></u>	<u>관리 및 예산편성</u>
<u><신 설></u>	<u>바. 이사회에 대한 정보보호</u>
	<u>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u>
	<u>사.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u>
	<u>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u>
	<u>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① 자</u>
	<u>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u>
	<u>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u>
	<u>호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u>
	<u>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u>
	<u>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u>
	<u>영하여야 한다.</u>
	<u>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u>
	<u>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된다.</u>
	<u>③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u>
	<u>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u>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